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2023-29호
2023. 6. 9.(금)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차 례

고 시(2)

- 지적기준점 성과고시(고시 제2023-53호) 1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고시 제2023-55호) 2

공 고(5)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청문)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3-638호) 3
- 무연고 사망자 공고(공고 제2023-643호) 4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3-644호) ... 5
-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신청 안내(공고 제2023-645호) 7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3-647호) 8

행정예고(1)

- 대전광역시 대덕구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일부변경 행정예고(공고 제2023-635호) 14

공									
람									

발행: 대전광역시 대덕구 / 편집: 기획홍보실(우: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 608-6602)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3-53호

지적기준점 성과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4항 및 「지적측량시행 규칙」 제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성과를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기준점 종류	기준점 번호	전		후		비 고
		평면직각중형선좌표		평면직각중형선좌표		
		X 좌 표	Y 좌 표	X좌표	Y좌표	
도근점	3014	-	-	418113.90	237461.25	세계좌표(신설)
기 준 원 점 명		중부원점				
소 재 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9-19				
측 량 년 월 일		2023년 6월 1일				
측 량 성 과 보 관 장 소		대덕구청 토지정책과				
비 고		-				

끝.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연축동 307	신탄진로 79	2023. 6. 9.	건물신축	신탄진으로 가는 주요 도로의 기능 반영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토지정책과(☎ 042-608-5306)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청문)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자의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한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6월 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고기간: 2023. 6. 9. ~ 2023. 6. 23.(15일간)
2.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제37조제7항
3. 행정처분(직권말소) 공고내용
 - 가. 처분의 제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직권말소
 - 나. 대상업소: 대덕구 우암로 421, 2층 (비래동) / 제네시스식당 (이○애)
 - 다.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
 - 제네시스식당(사업자등록 폐업일 2019. 2. 12.)
4. 고지사항
 -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 6월 23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하여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5. 본 처분에 대한 문의: 위생과 위생관리팀 ☎(042)608 - 6902. 끝.

무연고 사망자 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무연고 사체를 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연고자는 유골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무연고 사망자 인적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령)	등록기준지	발견일시 (사망일시)	발견(사망)장소	사망 원인	처방 방법
			주민등록상주소				
지명수	남	1948.5.6. (75세)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로52번길 25의6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4번길27, 104 -617(법동, 한마음아파트)	'23.5.26. (금) 07:59	대덕구 덕암로225 보니파시오요양병원	병사	화장 후 봉안

2. 발생상황

- 2023. 5. 26.(금) 07:59 대전 대덕구 덕암로225 보니파시오 요양병원에서 폐렴으로 사망.

3. 봉안기간 : 5년(2023. 6. 1. ~ 2028. 5. 31.)

4. 봉안장소 :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 대전추모공원(1관1층-도라지6592)

5. 공고기간 : 2023. 6. 9. ~ 2023. 7. 8.

6. 연락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장애인과(☎ 042-608-4793) 끝.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제1항 및 제31조(과태료)제2항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차량 소유자에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제 목: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2023. 6. 9. ~ 2023. 6. 26.(17일간)
- 공고대상 / 2명

연번	성명	차량번호	주소	위반내용	과태료(원)	반송 사유
1	손**애	94라81**	충청남도 논산시 별곡면 수락로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위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104,200	폐문 부재
2	호**득교 **협회	92어14**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천서로 *** (은행동)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위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103,000	폐문 부재

4. 공시송달내용

- 「미세먼지관리법」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관련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대덕구 환경과(☎042-608-6864)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독촉고지서의 경우,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이 부과 및 이후 매월 1.2%의 증가산금(최대 60개월)이 부과되며, 납기 내 미납 시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위 기간이 도래하면 독촉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문의처: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과(☎ 042-608-6864)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3-645호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신청 안내

대덕구 2023년('22년도 분)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비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고내용

-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비 신청 / 대상요건 충족자에 한함

2. 대상자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1973년 6월 27일부터 계속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 소득기준은 통계청 발표 전년도(2020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5,515,394원 이하 가구
- ※ 최근 3년간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이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조건을 충족해도 제외됨.

3. 지원내용

- 지원금 세대당 100만원 한도로 소득별 차등지급* / 2021년도 사용한 학자금, 전기, 가스, 상수도, 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
- * (차등지급) 기준소득 대비 91~100% 60만원, 81~90% 70만원, 71~80% 80만원, 61~70% 90만원, 60% 이하 100만원

4. 신청기간 : 2023. 6. 29. ~ 2023. 7. 20.까지

5. 첨부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등 작성 후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접수

6. 문의사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도시계획과 담당자(☎ 042-608-6878)

※ 위 조건 충족자는 기간 내 필히 신청바람.

미 신청으로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 2023-647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 관련 사전통지서, 부과통지서,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제 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 부과통지서,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관련근거
 - 가. 과태료 부과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같은 법 제16조
 - 나. 공시송달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기 간 : 2023. 6. 9. ~ 6. 30. (21일간)
4. 공고대상 : 별첨
5. 공시송달 내용
 - 가.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관련 사전통지서, 부과통지서,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대덕구 환경과(☎ 042-608-6866)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사전통지서의 경우, 2023. 6. 30.까지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과태료 부과금액이 부과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내 과태료 자진 납부 시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부과통지서 및 독촉고지서의 경우,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이 부과 및 이후 매월 1.2%의 증가산금(최대 60개월)이 부과되며, 납기 내 미납 시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덕구 환경과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라. 아울러 위 기간이 도래하면 사전통지서, 부과통지서, 독촉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문 의 처 :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과(☎042-608-6866) 끝.

[별첨1]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성 명	차량번호	주 소	위반내용	부과금액(원)	반송사유
조*미	03어09**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592번길 15, ***호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100,000	폐문부재
이*완	42서80**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촌당로 178, ***동 ****호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100,000	폐문부재
신*수	48누32**	대전광역시 유성구 배울2로 6, ***동 ****호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100,000	폐문부재
김*권	26거6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원남로386번길 **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100,000	폐문부재
이*경	110어55**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448, ***동 ****호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100,000	폐문부재
임*경	69저77**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587, ***동 ****호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100,000	폐문부재

[별첨2]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성명	차량번호	주소	위반내용	부과금액(원)	반송사유
강*상	40라32**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587, ***동 ****호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100,000	폐문부재
정*임	151누84**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로167번길 14, *동 ***호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100,000	폐문부재
이*순	63나53**	대전광역시 대덕구 우암동로17번길 19, ***호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100,000	폐문부재
김*희	16버89**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구역평촌1길 **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100,000	폐문부재
최*래	42수23**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3, *동 ***호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100,000	폐문부재
김*희	286부1084**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448, ***동 ***호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100,000	폐문부재
안*호	143다40**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409번길 *, *층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100,000	폐문부재
이*홍	39부75**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북로 52, ***동 ****호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100,000	폐문부재

[별첨3]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성명	차량번호	주소	위반내용	부과금액(원)	반송사유
김*우	136노36**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98번길 14, ***호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104,200	폐문부재
김*진	35루90**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서로10번길 21, ****동 ***호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	104,200	수취인불명
강*구	54소72**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32, *동 ****호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104,200	폐문부재
박*근	12주56**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리랑로 211, ***동 ***호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104,200	폐문부재
이*삼	14노97**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로 183, ****동 ****호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104,200	폐문부재

대전광역시 대덕구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일부변경 행정예고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을 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관련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3년 6월 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취지 및 목적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의 변경 운영사항을 알리고 효율적 운영을 위함

2. 관련근거

- 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제160조제3항(과태료)
- 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호(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 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 라.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마.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3(예고내용 등)

3. 행정예고(공고)기간: 2023. 6. 9. ~ 6. 29. (21일)

4. 시 행 일: 2023. 7. 1.(토)

5. 공고방법: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홈페이지(<http://www.daedeok.go.kr>)

6. 신고제 운영사항

가. 운영시간: 24시간(연중) / 점심시간 유예 없음

나.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 / 행정안전부 제공 시스템 활용

다. 신고(접수) 요건

1) 사진자료 첨부

-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 상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만 인정(동영상 제외)
-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사진 상 위반지역(어린이보호구역표시 등)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고 촬영 시간이 표시되도록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이어야 함(추가 사진 첨부 가능)

2) 신고기한: 사진을 촬영한 날 익일(다음날)까지 신고 접수

7. 신고대상 및 변경사항

가. 횡단보도 : 횡단보도 또는 정지선 내 접촉된 정지 상태 차량

나. 보도(인도), 자전거전용도로, 황색복선, 안전지대, 중앙선주차 : 지정구역 내 접촉(교차)된 정지 상태 차량

다.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황색복선, 적색복선 또는 연석에 적색표시)가 된 소화전 주변 5M 이내

※ 연석에 적색표시 또는 노면에 적색 복선 표시된 경우 과태료 2배 부과

라.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금지구역(황색선 지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의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마. 버스정류소: 버스정류소 표지판 좌우 10M 이내 또는 버스전용 노면표시 선에 접촉하여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바. 이중주차: 주행차선에 이중주차 된 정지 상태 차량

사.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정문 앞 황색복선 도로(주 출입구로 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 3배 부과 적용시간 : 평일 08:00~18:00(12~13만원) / 이외 시간 1배 부과

※ 사진상 어린이보호구역 표시(노면 또는 표지판)가 확인되어야 3배 부과

○ 변경사항 : 횡단보도 신고기준 변경

변경내용	기 존	변 경
횡단보도 신고기준	지정구역 내 접촉된 정지 상태 차량	횡단보도 또는 정지선 내 접촉된 정지 상태 차량

※ 행정예고 변경에 따른 계도기간(7.1. ~ 7.31.) 운영

8. 과태료부과: 요건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9.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교통과로 방문(1층),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대표자 성명, 법인번호), 주소, 생년월일 등
 - 제출서식: “붙임”
 - 제출방법: 방문, 우편 또는 팩스(042-608-3845)
 - 제출처: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덕구청 교통과)
 - 문의처: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교통과(☎042-608-5282)
- ※ 제출기한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